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의
번
안
호

242

제출년월일 : 2001. 12. 7.

제출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기간 : 2000. 7. 1 ~ 2001. 11. 30

3. 감사실시기간 : 2001. 12. 1(토) ~ 2001. 12. 7(금) 7일간

4.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감사대상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동사무소
- 감사위원장 :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 감사위원 : 장경주 의원, 김열호 의원, 박찬선 의원, 장영화 의원
박홍달 의원, 천승수 의원, 김창기 의원, 김용재 의원.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 감사반 | 감 사 대 상 동 | 감 사 위 원 | 감사보조자 |
|-----|------------------|---------------------|-------|
| 제1반 |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 3인 정웅섭, 천승수, 장명화 | 홍승찬 |
| 제2반 | 서초3동, 방배1동, 방배3동 | 2인 허명화, 장경주 | 민기홍 |
| 제3반 |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 2인 김얼호, 권금택 | 김종열 |
| 제4반 |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 2인 김용재, 정길자 | 김상남 |
| 제5반 |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 2인 김옥자, 박찬선 | 이순식 |
| 제6반 |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2인 이호혁, 최정규 | 김복종 |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없음

5. 감사장소

- 위원회식 감사(의회사무국) — 제2위원회 회의실
- 동사무소 (18개동) — 동장실 또는 회의실

6. 감사 착안사항

-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
-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사업의 타당성
-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제반사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괄]

| 국별 구분 | 계 | 시정 또는 개선요구 | 건의 | 처리요구 | 기타 |
|--------|-------|------------|----|------|----|
| 합계 | 78 | 55 | 23 | | |
| 공통사항 | 3 | 2 | 1 | | |
| 도시 관리국 | 계 | 34 | 24 | 10 | |
| | 도시점비과 | 16 | 10 | 6 | |
| | 지적과 | 1 | | 1 | |
| | 건축과 | 4 | 4 | | |
| | 공원녹지과 | 13 | 10 | 3 | |
| 건설 교통국 | 계 | 37 | 29 | 8 | |
| | 건설관리과 | 4 | 2 | 2 | |
| | 토목과 | 5 | 4 | | |
| | 치수방재과 | 7 | 5 | 2 | |
| | 교통행정과 | 7 | 6 | 1 | |
| | 주차관리과 | 14 | 11 | 3 | |
| 보건소 | 계 | 4 | | 4 | |
| | 보건행정과 | 1 | | 1 | |
| | 보건지도과 | 1 | | 1 | |
| | 의약과 | 2 | | 2 | |

[공 통]

| 소관부서 | 구 分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 | |
|---|--------------|---|------|---------|-------|---------|--|
| 자치행정과 각 동 | 시정 및 개선요구 | o 통구분을 동별형평에 맞게 구분 요. | | | | | |
| | | NO | 동 별 | 인 원 | 통 수 | 통장1인당인구 | |
| | | 1 | 서초1동 | 16,000명 | 37 | 433명 | |
| | | 2 | 서초2동 | 20,400명 | 49 | 417명 | |
| | | 3 | 서초4동 | 24,000명 | 67 | 359명 | |
| | |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가 동별형평에 맞지 않음.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향후 민방위 수당을 지급할 시 동별 통 구분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조정요망함. | | | | | |
| <u>조정안 검토</u> | | | | | | | |
| 재 무 과 도시정비과 | 건 의 | NO | 동 별 | 인 원 | 통 수 | 통장1인당인구 | |
| | | 1 | 서초1동 | 16,000명 | 20~22 | 800여명 | |
| | | 2 | 서초2동 | 20,400명 | 25~27 | " | |
| | | 3 | 서초4동 | 24,000명 | 30~33 | " | |
| 〈 천승수 위원 〉 | | | | | | | |
| <u>o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이한 예산집행</u> | | | | | | | |
|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협의 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 | | | | |
| 〈 장영화 위원 〉 | | | | | | |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해 당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u>o 각종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u></p> <p>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비해 징수건수가 대부분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과년도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금액은 1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p> <p>적발하여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한 것이며, 채납결손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집행에(종이 한 장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되는 바,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천승수 위원〉</p> |

[도시관리국]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도시정비과 | 건 의 | <p>o 도시정비과 계획완료 후 예산편성</p> <p>도시정비과 각종 사업들이 매년초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12월까지 실시계획까지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후 예산편성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
| "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체비지 관리방안</p> <p>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체비지 중에서 주거지역 작은 필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체비지 매각처리계획 수립할 용의는, 체비지 점용료 부과 건수 추후 발견시 변상금 조치는?</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강남대로상 도시계획사업 적극추진</p> <p>강남대로상 도시계획결정 사업의 추진이 보류됨. 서초구의 상업지구 비율이 낮고, 특히 강남 중심대로상 상업지역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 요청하여 빠른시일내 상세계획 확정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 "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방배로입구 전광판 이전요</p> <p>방배로 입구 설치된 대형 전광판 설치 이전요청을 2000년 행정감사시 답변에 이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
| " | 건 의 | <p>o 집단무허가 건물철거와 사후대책 철저</p> <p>집단 무허기촌은 겨울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시전 점검후 화재발생 예방차원에서 직접 전기안전점검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 | 건 의 | <p>o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p> <p>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정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저 리 의 견 (지적사항) |
|-------|-----------|--|
|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유휴지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p> <p>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많은 유휴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를 적절히 활용토록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있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도시정비과 | 건 의 | <p>○ 학교용지 이용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p> <p>학교용지이용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올 추경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정도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무엇이고 또한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함으로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학교용지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의 문제점.</p> <p>현재의 계획을 보면 양재권역, 서초권역, 잠원권역 3개지역으로 분류하여 308-06목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분야에서 계획에 의거 이미 추진완료 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일치된 부분도 있는데, 중복성이 있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투자대 가치가 미흡하다고 봄. 특히 양재권역은 현재 내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종합공동부락시설)이 직영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생기므로 더더욱 세밀한 시설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본 계획은 재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도시정비과 | 건 의 | <p>○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에 관하여</p> <p>현수막 지정계시대가 주로 세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로형 보다 가로형이 내용 전달면과 공간을 활용하는데 용이하여 전달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방안 강구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공원용지 등기이전에 관하여</p> <p>공원용지중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51필지를 서초구로 등기 이전사업은 중요한 시안이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바람. < 장경주 위원 ></p> |
|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방배동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할 것.</p> <p>방배동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5억원이 서울시 세분화 계획과 병행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세분화 지침에 얹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구상한 방배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한 의지를 보이기 바람. < 천승수 위원 ></p> |
|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회문제가 됨으로 사전단속과 관리 철저</p> <p>비닐하우스내 불법 무허가 건물과 2000년 이후 신발생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13개지역 257동 650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단속소홀과 근무태만, 주민등록 관리소홀등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철거도 못하고 암적인 문제로 계속 남아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바람. < 장영화 위원 ></p> |
| 도시정비과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p> <p>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새우촌공원종합시설 건립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노외주차장건립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 제4항에 주차장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새우촌공원종합시설은 대지 13,877m² 건축 총면적 4,900m²로 주차장법에 위배되며, 부득히 특별회계를 새우촌 종합시설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현행규정을 개정후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 < 김열호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지 적 과 | 건 의 | <p>o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p> <p>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934개 업소중 76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p> <p>〈 장경주 위원 〉</p> |
| 건 측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대성사 주변 녹지훼손 원상복구</p> <p>서초동 산141번지 4호 외 3 우면산 대성사 증축후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사실은 불법이라고 판단되니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p> <p>〈 박홍달 위원, 장영화 위원 〉</p> |
| 건 측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방배동 청권사 진입로 완벽 복구요</p> <p>방배동 산43의 6호 (청권사) 붕괴 2000.12.29. 03:00경 복구를 위하여 절개를 하였으나, 아직도 자동차 진입로 및 나무식재가 부족함으로 진입로 등 원상복구등 완벽한 복구가 요망됨.</p> <p>〈 박홍달 위원 〉</p> |
| 건 측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조속 제정</p> <p>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함. (2000년도 감사시 제시한 내용)</p> <p>〈 김열호 위원 〉</p> |
| 건 측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신축공사장 사후 관리 철저</p> <p>신축건축을 준공시 조경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과 준공후 사후관리 등 수시점검이 없어 훼손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함으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p> <p>〈 박홍달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자적사항) |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서초구 관내어린이공원 실정에 맞는 계획세워 관리</p> <p>서초구 어린이공원 88개소 사전계획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 요망. < 박홍달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지역의 추후 대책 철저</p> <p>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2개마을 염곡마을, 남태령 전원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인구 1000명이상 마을인 성·형촌마을이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사유 및 추후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 < 김용재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청계산 매봉등산로에 양방향 교행토록 개선</p> <p>주말이나 주중에는 청계산 정상 9부능선 등산로로 길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교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장경주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양재천 화장실 설치 장소 변경에 대하여</p> <p>2000 자치구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으로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를 사업변경하여 우면신에 설치하였는 바 이는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장영화 위원 ></p> |
| 공원녹지과 | 건의 | <p>○ 등산로 입구에 홍보물 게시대 설치 요망</p> <p>청계산 원터골 등산로등 관내 등산로 입구에 산악회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게시하는 게시대 설치 요망. < 장경주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겨울철 등산객 안전을 위해 등산로 낙엽제거 요망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등산로 쌓인 낙엽 때문에 등산객들의 사고가 빈번한데 산불감시 공익요원들을 동원하여 등산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여 등산객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청룡공원조성시 묘목수 부족분에 대한 조치와 하자 보수 철저 청룡공원 조성 공사시 식재한 수목의 하자 (묘목 식재 부족분 포함)가 발생 시정을 요구 하였는 바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간선도로상 가로수 정비 철저 관내 각 구간별 간선도로의 가로수 관리 소홀을 지적, 동별 실태조사하여 사고나 또는 고사로 배어낸 곳에 재보식하고, 현 가로수 증 상태 불량한(영양실조) 나누는 개량 또는 거름을 주어 건강한 나무, 아름다운 자태로 자랄 수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특히 서초 구간별 특색 사업으로 관리되는 즉, 우면로는 칠엽수(마로니에) 서초로는 느티나무 거리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 공원녹지과 | 건 의 | <p>o 양재시민의 숲 명점개정에 관하여 양재시민의 숲에는 윤봉길 의사기념관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윤봉길 의사기념관이 우리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므로, 양재시민의 숲을 매현공원이라든지 윤봉길 공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마땅하니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 건 의 | <p>o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요망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지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양재2동 뿐만이 아니라 전동이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나 양재근린공원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용함이 효율적이며, 공원내 주차장이라도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함이 마땅하니 재검토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공원녹지과 토 목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계획적인 학교자원사업지양.</p> <p>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 308-06 목의 보조금 지원내용의 각종사업을 해줌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사전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사업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308-06 목의 예산을 수립할 때 사전에 각 학교와 교육 청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지침대로 절차를 밟아 편성 지원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용기설물 철거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p> <p>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쓰레기퍼리를 위한 고속 발효기 및 고속2발효기보통○가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발효 기의 고장 및 사용중지로 인한 발효기 및 가설물 철거한 녹지대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등을 시생시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
| 공원녹지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입산금지 기간에 대하여</p> <p>입산금지의 목적은 산불예방이 목적인데, 언제부터 언제 까지 기간을 정하여 입산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기상상태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금지를 시시키는 것이 타당하니 입산금지 현수막을 다시 바꾸어 구민의 겨울철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건설교통국]

| 소관부서 | 구 분 | 제 라 의 견 (지적사항) |
|-------|-----------|--|
| 건설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기부체납된 토지 공부정리 철저</p> <p>반포4동 도로 4필지가 도로 기부체납되었는데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이전에 기부체납된 도로나 공원 등이 시소유로 등재하지 않아서 몇십년이 지난 현재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않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즉시 정리를 하기 바라고 공부정리를 전신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건설관리과 | 건 의 | <p>o 도로점용의 민원처리의 문제점과 보·차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그 대책</p> <p>도로점용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유연성을 유지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건축현장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 10월까지 1,000여건으로 너무 단속 위주인 것 같으므로, 단속을 완화할 방안을 연구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건설관리과 | 건 의 | <p>o 공공기관 도로복구비 체납액 징수 철저</p> <p>도로굴착허가는 도로복구비 납부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체납액이 크게 발생할 수 없음에도 2000년도 1억2천 9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이체납중에는 강남수도사업소 한전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니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건설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보도블럭 재활용 철저</p> <p>일부위행업소등이 영업장소를 보도등 도로변까지 영업장소를 확장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최정규 위원〉</p> |
| 토 목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보도블럭 재활용 철저</p> <p>보도블럭 교체 후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을 재사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박찬선 위원 〉</p> |
| 토 목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화물터미널-원터미널구간 고속도로변 부채도로 개설공사 사업 진행중 중단되었으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토 목 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시민생활불편요소(골목길 소파, 보도블럭파손)</p> <p>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강구.</p> <p>종전에는 골목길 소파·보도블럭 파손 등 소규모사업이 발생되었을시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동에 소규모공사 보수비를 할당하여 동장책임하에 처리토록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어 구청기능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토 목 과 치수방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공사설계시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계획적 설계요.</p> <p>모든 공사시 상세한 설계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 및 효율성이 부족함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상세한 설계가 되도록 연구 검토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치수방재과 | 건 의 | <p>o 하수도 준설이 끝난 곳에 준설완료 흥보물 부착</p> <p>하수도 준설완료 후 공사를 완료했다는 흥보물을 부착 함으로써 완벽한 준설공사와 열심히 일한 모습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p> <p style="text-align: right;">〈 박찬선 위원 〉</p> |
| 치수방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이행</p> <p>양재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현재 3년동안 중단상태에서 강남구나 과천쪽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여 양재천 살리기에 앞서고 있는 반면 서초구 구간은 사업이 부진함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서라도 양재천 정비공사를 마무리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치수방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바람골~개나리골 소하천 정비를 절저히</p> <p>98년도 폭우시 원자동 바람골에서 소하천으로 우수가 밀려들어 지반이 내려가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돌망태 등으로 쌓아서 복구하여 예산절감과 생태학적으로 자연생태가 많이 복원되었으나, 바람골에서 개나리골 소하천구간 정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치수방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저지대 침수지역 간이펌프장 조속히 착공할 것.</p> <p>교종 뒤 저지대 침수지역에 조속히 예산을 반영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착공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치수방재과 | 건 의 | <p>o 양재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마무리 철저</p> <p>양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선 하려는 바, 과천시와 강남구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려 의 견 (지적사항) |
|-------|-----------|--|
| 치수방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각종 기금이나 사업시행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예산 집행</p> <p>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8조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 또는 변경토록되었으나 양재천 심의위원회에서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면동 식유촌 침수해소공사에 변경사용하였는데 다음 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장영화 위원〉</p>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감독 소홀자 문제</p> <p>방배동 중앙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시 설계 미숙 공사감독 소홀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감독 책임자를 법적 조치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박홍달 위원〉</p>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마을버스 불법운행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p> <p>사평로를 다니는 마을버스가 이수고가도로가 완공되었는데도 반포전화국 앞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가밑을 돌아 삼호아파트 앞에서 정차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고 막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이 밤늦은 시간에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리를 생각하기 보다 주민을 위해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장영화 위원, 박찬선 위원〉</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자적사항) |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버스전용차로 표시선 설치불합리 관내버스전용차선 설치가 합리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승용차들이 주행중 본의아니게 차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하는 곳은 충분한 준비선을 두어야 우회전차량이 우회전하는데 차선위반을 하지 않게 됨. 또한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할시에도 대로의 중앙쪽으로 진로를 잡을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차선을 두어야 할 것인데, 바로 버스전용차선이 시작됨으로 하여 승용차의 차선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내 공영주차장 해약으로 인한 세입손실의 보존 대책 철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공사를 9월부터 착공하였는데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을 1월에 계약, 2월에 해약하였으므로 적어도 6-7개월 세입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주차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협의·조정을 했다면 손실금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봄.</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논현로 능률차선제 · 논현로 능률차로제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 교통행정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차장특별회계불용액이 2000년도 262억 4천만원 2001년도 추정치 276억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공공용지 보상법에 얹매어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해 민원의 대 혼란이 예상됨. 주차관리과장은 과감하게 현시가 감정을 하여 주차장 회계가 불용되는 일이 없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제 리 의 견 (지적사항) |
|-------|-----------|---|
| 교통행정과 | 건의 | <p>o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련법규 제정 강구</p> <p>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4m의 소방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절대 그어서는 안된다. 주차요금도 다양하고 주·야간 10일간, 15일간등 시간도 다양한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혼선이나 사사로운 언쟁이 없도록 시행규칙등 서초구 조례로 확실하게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장영화 위원, 박찬선 위원〉</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p> <p>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수립치 않아 원활한 행정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시행함에는 제3조 세입란에 있어 위탁관리, 과징금, 보조금, 과태료 등 예산을 관리하는 시행상 필요한 행정절차 명시 o 제5조의 일시차입, 임여금 처리를 위한 행정처리 o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 융자금 자급에 따른 각종서식 및 행정절차 등이 서부 시행 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p style="text-align: right;">〈김열호 위원〉</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방배로 정류장 단속 철저</p> <p>방배로 버스베이(정류장) 단속이 소홀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있으니, 철저한 단속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박홍달 위원〉</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주차장부지매입 절차에 대한 문제점.</p> <p>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주차장부지로 결정(도시정비과)의회결정된 후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로 인하여 도시계획 결정되기전에 개인재산권 행사로 타인과 매매체결로 인하여 토지주가 변경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음.</p> <p>또한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됨.</p> <p>주차장부지를 매입시 특별회계로 매입절차에 따라 매입 구재산으로 정리한 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를 만든다음.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사용함이 바람직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김열호 위원〉</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주차관리과 | 건 의 | <p>○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p> <p>신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건물외벽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례로도 제정했는데 제정한 이후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였나? 정기검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시정요</p> <p>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 발생이 2000년도 총 348건 2001. 10까지 총 520건 매년 증가하고 있음.</p> <p>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이 사료되는 바, 부과에 민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76.5%이르고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에 철저</p> <p>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23.5%이고 76.5%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누차 시정을 들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동별현황과 현장실시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옥외광고물 체납결손 처분없게 만전을 기하기 바랍</p> <p>옥내외 광고물 과징금 부과는 적발하여 부과에서 징수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체납되어도 즉시 부과를 하지 못해 업무가 바뀌면 채납되는 사례가 많아 채납 결손하게됨. 부과하여 징수가 안되면 즉시 재부과하여 징수건수 보다 체납결손 건수가 많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과징수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자적사항) |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76.5%이르고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에 철저</p> <p>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23.5%이고 76.5%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누차 시정을 들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동별현황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민원폭주하지 않도록 대비</p> <p>거주자우선주차제에 즈음하여 아파트 이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차면수가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나 업무시설 주차로 큰 혼란이 예상되며, 단독주택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형편임으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만전을 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
| 주차관리과 | 건 의 | <p>○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전담팀을 구성, 징수에 철저</p> <p>주차위반과태료 단속건수가 연간 230,000건에 이월 미수액 건수 753,105건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징수전 담팀을 구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
| 주차관리과 도시정비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p> <p>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새우촌공원종합시설 건립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노외주차장건립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 제4항에 주차장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새우촌공원종합시설은 대지 13,877㎡ 건축 총면적 4,900㎡로 주차장법에 위배되며, 부득히 특별회계를 새우촌 종합시설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현행규정을 개정후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주차관리과 | 시정 및 개선요구 | <p>o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철저</p> <p>관내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거주자 선주차실시에 장·단점으로 민원발생이 과중되고 있음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계획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행정은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가 요망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선안 4가지를 지적하는 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주차면 도색을 1년 상·후반기 2회 실시 필요 2) 현재 주차선 면안에 유료라고 표시한 것을 착각하여 유료 주차하는 곳으로 알고, 주차하여 시비가 자주 발생됨. 3) 구청사 내 주차관리과는 주·야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하였는데, 민원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수요자 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주간에만 수신자부담 전화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p>위 열거한 4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관리가 되도록 시정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보건소]

| 소관부서 | 구 분 | 체 리 의 견 (지적사항) |
|-------|-----|--|
| 보 건 소 | 건 의 | <p>○ 명절 때 주민이 약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명절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제로 운영하여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여 줄 것을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박찬선 위원 〉</p> |
| | 건 의 | <p>○ 약국, 의료기관 서초구민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점검</p> <p>우리관내 의료기관 762곳, 의약업소 609곳, 지도점검 51% 점검완료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지도점검팀은 몇 명이 어느 분야 점검하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 보 건 소 | 건 의 | <p>1. 조직관리점검</p> <p>현재 보건소는 3개과 9개팀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2개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보건행정업무와 의약업무에 대한 행정이 소홀할 우려가 있음.</p> <p>조속히 2개과장의 보직을 총원하여 보건업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2. 월드컵대비 청소차량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p> <p>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은 우리구 전지역을 곳곳 누비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여름철 발생되는 악취제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외국방문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구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 소관부서 | 구 분 |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
|-------|-----|--|
| 보 건 소 | 건 의 | <p>o 에이즈감염자 철저한 관리와 쪽질방, 안마소 등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검진 관리 철저</p> <p>에이즈감염자가 계속 증가되고 현재는 유아까지도 감염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서초구 보건소 에이즈관리자는 20명으로 몇년간 변함이 없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요즈음 쪽질방에도 지압, 안마등을 많이하고 있는데 위생상태나 종업원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